

(안내)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 등에 대해
법무성 입국관리국

일본에서 출생한 외국인, 일본 국적 이탈자로 출생 또는 일본 국적 이탈
일로부터 60 일 이상 일본에 재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생 또는 일본 국
적 이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지방입국관리관서에 ‘재류자격 취득허가 신
청’ 을 해 주십시오.

1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

- (1) 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서 또는 영주허가 신청서 1 통
※영주허가 신청서는 ‘영주자’ 의 자녀로 출생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.
(주) 지방입국관리관서에서 받거나 법무성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.
- (2) 사진 1 매
(주) 16 세 미만인 자, 3 개월 이하의 재류기간 결정 희망자, ‘외교’ 또는 ‘공용’ 의 재류
자격 취득 희망자 등은 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(3) 다음 중 해당 서류 (①, ② 중 하나)
 - ① 출생을 증명하는 서류 (출생자)
 - ②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(일본 국적 이탈자)
- (4) 여권 (여권을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류)
(주) 여권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여권이 발급되기를 기다리지 말고 출생 또는 국
적 이탈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신청해 주십시오.
- (5) 그 외 취득하고자 하는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서류
 - ① 중장기간 일본 재류자 (주) 는 주민표 사본(시구청촌 발행)을 제출
해 주십시오.
(주) 3 개월 이하의 재류기간 결정 희망자, ‘단기체류’ 의 재류자격 결정 희망자, ‘외교’
또는 ‘공용’ 의 재류자격 취득 희망자 등은 제외됩니다.
 - ② 부모 등의 부양을 받아 일본에 체재하는 경우에는 부양자의 주민세
과세증명서 및 납세증명서(시구청촌 발행)가 필요합니다.
 - ③ 기타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하기의 법무성 홈페이지 또는 외국인
재류 종합정보센터에서 확인해 주십시오.

2 신청 자격

- 신청인 본인
- 신청인 본인의 법정대리인
- 다음에 해당하는 신청대리인
 - ① 지방입국관리국장에게 신청 중개 신고를 한 자 또는 승인을 받은 자
 - ② 신청인 본인의 친족이나 동거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 지방입국관
리국장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자 (주)
(주) 신청인 본인이 16 세 미만인 경우 또는 질병 등 기타 이유로 인해 스스로 신청이 불
가능한 경우

※자세한 문의 사항은

법무성 홈페이지

【재류자격 취득허가 신청에 대해】

<http://www.moj.go.jp/ONLINE/IMMIGRATION/16-10.html>

【영주허가 신청에 대해】

<http://www.moj.go.jp/ONLINE/IMMIGRATION/16-4.html>

외국인 재류 종합정보센터

0570-013904 (일본 국내에서 통화하는 경우)

03-5796-7112 (IP 전화, PHS, 해외에서 통화하는 경우)